

진도군 공고 제2022-906호

## 제285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285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부의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일

진 도 군



1. 제285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목록 1부.
2. 제285회 진도군의회 정례회 부의안건 각 1부.



# 진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2022-98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 1. 제정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 2022. 7. 5.)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안 제2조)
  -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기본전략 수립
-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추진상황의 점검 (안 제3조 ~ 제4조)
  -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
  -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안 제6조)
- 지속가능성 평가 (안 제7조)
  - 2년마다 지속가능성 점검 및 평가
- 진도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안 제9조)
  - 진도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위원회 기능 대행

3.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5. 관련부서 의견: 의견 없음

6. 입법예고 사항: 2022. 10. 19. ~ 2022. 11. 8.(20일간)

○ 제출의견: 1명(2건) / 전라남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사회단체, 학계, 청년단체 위촉 요청 : 미수용

→ 법제처 입법 컨설팅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 기능 대행

- 예산 지원 대상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명시 요청 : 미수용

→ 자문·연구의뢰 대상에 관계전문가, 전문연구기관 등 포괄적인  
명시 사항으로 지원 가능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해당 없음

8. 비용추계서: 붙임(미첨부 사유서)

9. 참고사항: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2022. 11. 9. 원안의결

## 진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및 기본정책 방향
4.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진도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④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한 경우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기타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해당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위원회는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도군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해당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진도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진도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진도군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진도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진도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2년마다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진도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진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진도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0조(조사 및 연구 의뢰) ① 군수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추진상황의 점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발전지표 및 보고서 작성 등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과 조사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민관협력단체,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99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 1. 개정이유

- 2021년 진도군-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진도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서 제80조(현장학습비 지원)와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직원의 복지 및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7조제7호 신설)
  -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문화탐방 활동 지원”

## 3. 개정안 : 붙임

## 4. 관계법령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없음

## 6. 입법예고 사항 : 2022. 10. 19. ~ 2022. 11. 8.(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분석평가서 검토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2. 11. 9. 원안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 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문화탐방 활동 지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p> <p>1. ~ 6. (생   략)</p> <p><u>&lt;신   설&gt;</u></p> <p><u>7.</u> (생략)</p>	<p>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문화탐방 활동 지원</u></p> <p><u>8.</u> (현행 제7호와 같음)</p>

# 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00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 1.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정보공개수수료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정보공개수수료 일부개정(안 별표2)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와 “전자파일로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수수료를 무료로 개정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수수료를 1GB당 800원으로 개정

## 3. 개정안 : 붙임

## 4.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2. 10. 5. ~ 2022. 10. 25.(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불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불임(미첨부사유서)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2. 11. 9. 원안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 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정보공개수수료(제3조 관련)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1시간 이내: 무료</li> <li>-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100원</li> </ul> </li> <li>-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li> </ul>
필름· 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li> </ul> </li> <li>-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li> </ul> </li> </ul> </li> <li>○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li> </ul> </li> <li>-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li> </ul> </li> </ul> </li> <li>○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li> </ul> </li> <li>-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li> </ul> </li> </ul> </li> <li>○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마다 5,000원</li> </ul> </li> <li>-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마다 3,000원</li> </ul> </li> </ul>                             ※ 매체비용은 별도                         </li> <li>○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마다 5,000원</li> </ul> </li> <li>-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마다 3,000원</li> </ul> </li> </ul>                             ※ 매체비용은 별도                         </li> <li>○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6,000원</li> </ul>                             ※ 매체비용은 별도                         </li> <li>○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 200원</li> <li>5"×7" 300원</li> <li>8"×10" 400원</li> </ul> </li> </ul> </li> </ul> </li> </ul>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10컷 기준)1회: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li> </ul> </li> </ul> </li> <li>○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2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200원</li> </ul> </li> <li>-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150원</li> </ul> </li> </ul> </li> </ul>

<p>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마다 1,000원</li> </ul> </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li>○ 슬라이드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3,000원</li> </ul> </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p>전자파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 1시간 이내 : 무료</li> <li>-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li> </ul> </li> <li>○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 1,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100원</li> </ul> </li> <li>-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li> <li>○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li> </ul> </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li>○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li> <li>-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li> </ul> </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li>○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GB마다 800원</li> </ul> </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b>정보공개수수료(제3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공개대상</th> <th style="width: 90%;">공개방법 및 수수료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b>전자파일</b></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li> <li>· 1장 초과마다 100원</li> <li>- B4 이하 250원</li>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li>○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li> <li>-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li> <li>-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li> <li>-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li> <li>-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ul> </td> </tr> </tbody> </table> <p>&lt; 비교 &gt;</p> <p>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p>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b>전자파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li> <li>· 1장 초과마다 100원</li> <li>- B4 이하 250원</li>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li>○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li> <li>-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li> <li>-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li> <li>-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li> <li>-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ul>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b>정보공개수수료(제3조 관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공개대상</th> <th style="width: 90%;">공개방법 및 수수료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b>전자파일</b></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li> <li>· 1장 초과마다 100원</li> <li>- B4 이하 250원</li>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li>○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 · 도면 · 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li> <li>-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GB마다 8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ul> </td> </tr> </tbody> </table> <p>&lt; 비교 &gt;</p> <p>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p>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b>전자파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li> <li>· 1장 초과마다 100원</li> <li>- B4 이하 250원</li>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li>○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 · 도면 · 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li> <li>-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GB마다 8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ul>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b>전자파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li> <li>· 1장 초과마다 100원</li> <li>- B4 이하 250원</li>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li>○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li> <li>-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li> <li>-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li> <li>-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li> <li>-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ul>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b>전자파일</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li> <li>· 1장 초과마다 100원</li> <li>- B4 이하 250원</li> <li>· 1장 초과마다 50원</li> </ul> </li> <li>○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 · 도면 · 사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li> <li>-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li>○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GB마다 800원</li> <li>※ 매체비용은 별도</li> </ul> </li> </ul>								

# 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01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 1.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법령 정비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취지에 맞게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도모

## 2. 주요내용

- 특별교통수단이용대상자 등록·심사(안 제12조)
  - 특별교통수단이용대상자의 등록 신청 및 이용자격 심사

## 3. 개정안 : 붙임

## 4.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 6. 입법예고 사항 : 2022. 8. 25. ~ 9. 14.(20일간) / 의견 없음

##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붙임(검토 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8. 비용추계사항 : 붙임(미첨부사유서)

##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2. 11. 9.(수) / 원안의결

진도군조례 제 호

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나목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특별교통수단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생략)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u>장애등급</u>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계약 여부와 이용계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p> <p>3. (생략)</p> <p>③ ~ ⑧ (생략)</p>	<p>제12조(특별교통수단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u>장애정도</u> ----- ----- ----- ----- -----</p> <p>3. (현행과 같음)</p> <p>③ ~ ⑧ (현행과 같음)</p>

# 진도군 교통안전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02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 1. 개정이유

- 고령운전자 자진반납자에 대한 지원금과 조례가 실제 일치하지 않아 군민에게 혼선을 주고 있음
- 현재 20만원(아리랑상품권)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군 또는 전남도 지원금이 변경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코자 함

## 2. 주요내용

-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제7조)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 3. 개정안 : 붙임

## 4. 관계법령 : 「전라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 6. 입법예고 사항 : 2022. 8. 25. ~ 9. 14.(20일간) / 의견 없음

##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붙임(검토 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사항 : 붙임(미첨부사유서)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2. 11. 9.(수) / 원안의결

진도군조례 제 호

## 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10만원 이내의”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u>10만원 이내의</u>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p>	<p>제7조(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 ----- ----- ----- ----- <u>예산의 범위에</u> <u>선</u> ----- ----- --.</p>

# 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03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 1. 개정이유

- 2021. 12. 7. 「주차장법」 제12조의3제1항 개정으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범위에 항만배후단지개발 사업을 추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진도군 주차장 조례」 제13조 제1항 개정
  - 진도군 단지조성사업 등 종류에 7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추가

## 3. 개정안 : 붙임

## 4. 관계법령 : 「주차장법」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 6. 입법예고 사항 : 2022. 10. 19. ~ 11. 8.(20일간) / 의견 없음

##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붙임(검토 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 8. 비용추계사항 : 붙임(미첨부사유서)

## 9. 참고사항 : 해당없음

##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2. 11. 9.(수) / 원안의결

진도군 조례 제 호

## 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향만배후단지개발사업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   략)</p> <p><u>&lt;신   설&gt;</u></p> <p>② · ③ (생   략)</p>	<p>제13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u>7.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u></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진도군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시설 조성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2-104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 1. 제정이유

- 진도군 해역에서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사업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및 주민 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발전사업이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책 마련
  - 발전사업 시행으로 인한 어업피해 예방 및 어업인 보호 노력
- 발전사업자의 책무(안 제4조)
  - 진도군 시책에 적극 협력 및 주민 복리 증진과 어업피해 최소화 노력
- 주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5조)
  - 누구나 발전사업 시책 추진 과정에 의견 제시 가능
  - 어업피해 예방과 어업인 보호 정책에 적극 협조 노력
- 해상풍력에너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시행(안 제6조)
  - 종합관리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 종합관리계획 포함사항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 발전시설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발전시설 난개발 방지, 어업피해 예방 및 어업인 보호를 위한 사항
- 집적화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군수가 발전시설의 체계적 개발 및 어업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실태조사(안 제7조)

-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어업피해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 실시 가능

### ○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의 설치(안 제8조)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민관협의회 구성)에 따라 설치

####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 민관협의회는 정부위원, 민간위원, 공익위원 등 20명 내외로 구성
  - (정부위원) 지자체장이 추천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
    - \* 에너지산업, 환경, 해양수산 등 관련 부서가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
  - (민간위원) 실질적 이해관계자(지역주민, 어업인, 집적화단지로 인해 신규 설치되는 송·변전설비 주변주민 등)로 구성
    - \* 해상풍력의 경우,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대표하는 어업인 단체 포함 가능
  - (공익위원) 사업분야, 갈등조정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
    - \* 공익위원은 전체위원의 20%이상으로 구성,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각각 절반씩 추천
- 민간위원과 민간위원의 추천으로 위촉하는 공익위원 수의 합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
- 사업시행자는 민간위원이 될 수 있음. 다만, 사업시행자가 다수인 경우 전체위원의 10% 이내로 하고, 민간위원 과반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 민관협의회 구성(안 제9조)

- (구성인원) 21명 /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0명, 공익위원 6명
- (위원장·부위원장)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위원구성)
  - 정부위원: 부군수, 진도항만개발과장, 그린에너지사업과장, 수산지원  
과장, 환경산림과장
  - 민간위원: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진도군의회 의원
    - 나.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업인단체 대표자
    - 다. 집적화단지가 소재하는 마을의 이장
    - 라. 지침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 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 기업 또는 기관·단체 등에  
서 추천한 사람
    - 바. 그 밖에 해상풍력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  
민 또는 어업인
  - 공익위원: 사업분야, 갈등조정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정부위  
원과 민간위원이 협의하여 각각 3명씩 추천)

## ○ 민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협의사항) 집적화단지에 관한 사항, 환경에 관한 사항, 주민 이익공유  
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민관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회의개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  
청시
- (의결정족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위원해촉) 심신장애, 직무관련 비위사실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의 경우,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에 의결을 거쳐 해촉
- (지역별·분야별 협의체) 민관협의회 하위에 지역별·분야별 협의체 운영  
가능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회의록 작성, 주요내용 군 홈페이지 공개

○ 위원 임기 및 위원장 직무 등 (안 제11조 ~ 제14조)

- (위원 임기) 민간위원과 공익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
- (위원장 직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 총괄
- (간사) 해상풍력에너지 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둠
- (운영세칙)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 주민설명회 개최(안 제15조)

- 설명회 3일 전까지 개최일시, 장소 등을 주민과 어업인 단체에 서면 통지
- 참석자에게 발전사업 관련 자료 제공 가능

○ 발전사업자의 지역기여 상생노력(안 제16조)

- 지역주민 우선 채용
- 법인 사업장 소재지를 군 관내 주소지로 등록
- 군 소재 기업에서 직접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우선 매입
- 개발사업 시행 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안 제17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주민참여(안 제18조)

- 군수는 3MW 이상 발전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수익이 주민에게 적절하게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지원(안 제19조)

- 군수는 발전사업 참여 주민의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가능

3. 조례안: 붙임

4. 관계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제도 관리·운영 지침」

5. 관련부서 의견: 의견 없음

6. 입법예고 사항: 2022. 10. 19. ~ 2022. 11. 8.(20일간) / 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결과 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9. 참고사항: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완료(2022. 7. 15.)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2. 11. 9. 수정의결

- 제15조 제1항 문구 수정
- 어업인 단체에 서면으로 통지 → 어업인 단체 등에 서면으로 통지

## 진도군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시설 조성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해역에서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사업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 및 주민 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이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발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어업피해(이하 “어업피해”라 한다)를 예방하고 어업인 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해상풍력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책무) ①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사업의 추진을 위한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전사업자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어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진도군민은 누구나 발전사업에 관한 시책의 추진 과정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군수가 추진하는 어업피해 예방과 어업인 등 보호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해상풍력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해상풍력에너지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의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진도군 해상풍력에너지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발전시설 개발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2. 발전시설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발전시설의 난개발 방지, 어업피해 예방 및 어업인 등 보호를 위한 사항
4. 해상풍력에너지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 구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발전시설의 체계적인 개발 및 어업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종합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어업피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진도군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지침 제5조에 따라 집적화단지에서의 발전시설 설치와 발전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진도군 해상풍력발전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

를 둔다.

제9조(민관협의회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0명, 공익위원 6명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민관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한다.

1. 정부위원: 부군수, 진도항만개발과장, 그린에너지사업과장, 수산지원과장, 환경산림과장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진도군의회 의원

나. 진도군 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업인단체 대표자

다. 집적화단지가 소재하는 마을의 이장

라. 지침 제3조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 기업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바. 그 밖에 해상풍력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 또는 어업인

3. 공익위원: 사업분야, 갈등조정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이 협의하여 각각 3명씩 추천)

제10조(민관협의회 운영) ①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집적화단지 입지 후보지역, 사업개요, 추진계획, 계통 연계방안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전사업과 관련된 환경에 관한 사항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별표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의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방안 및 주민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관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관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개최하고, 위원 전체의 합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되 표결로 정하는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위원을 민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민관협의회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지속적으로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군은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 하위에 지역

별 또는 분야별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체에는 민관협의회 구성원을 비롯하여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⑤ 군은 민관협의회 개최 시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을 참고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민관협의회 회의결과 등 운영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정보공개시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의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⑥ 군은 민관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집적화 단지 지정 이후에도 민관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사업계획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과 공익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민관협의회에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상풍력에너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주민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지침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3일 전까지 개최일시, 개최장소 등을 풍황계측기(발전사업의 경제성 측정을 위해 해당 해역에 설치 허가 신청된 장비를 말한다)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발전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대표하는 어업인 단체 등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주민설명회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군수는 발전사업의 안내를 위해 발전사업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료를 주민설명회 참석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발전사업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발전사업의 주요내용(발전량, 사업 계획, 발전사업자의 시공이력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사전에 제공 요청된 주민발전사업 허가 관련 자료

제16조(발전사업자의 지역기여 상생노력) 군 관할 구역 내에서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회적 기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우선 채용
2. 법인 사업장 소재지를 군 관내 주소지로 등록
3. 군 소재 기업에서 직접조달 가능한 자재 품목이 품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우선 매입
4. 개발사업 시행 시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5.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17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기본 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등)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8조(주민참여) 군수는 3MW 이상 발전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제공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 군수는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의 이익 공유를 위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진도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2-105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 1. 제정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22년 4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 등을 제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안 제2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안 제4조)
- 자율상권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안 제5조 ~ 제6조)
- 자율상권조합의 사업 결과 보고(안 제7조)
-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3. 조례안 : 붙임

## 4. 관계법령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 6. 입법예고 사항 : 2022. 8. 24. ~ 9. 13.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2. 11. 9. 원안의결

## 진도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
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5. “활성화구역”이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을 말한다.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
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의 작성
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
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수수료의 징수
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
7. 증명서 및 공문 서류의 보관 및 관리

## 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5조(자율상권구역 내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 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
2.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 기간 중 매년 도 사업결과 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 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10부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활성화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상인 및 생애 최초

창업 상인 등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율상권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상생구역의 업종제한)**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진도군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06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 1. 개정이유

- 군민의 의료수요 충족 및 의료기반의 확충을 위한 소아청소년과 전문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재정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민간의료기관 및 진도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지원 대상 등의 범위 추가 (안 제5조)
  - 소아청소년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지원
- 신청 및 지원 방법에 대한 사항 (안 제6조)

##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4. 관계법령 : 「의료법」, 「보건의료기본법」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 6. 입법예고 사항 : 2022. 10. 19. ~ 11. 8.(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2. 11. 9. 원안의결

## 진도군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간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같은 조 제5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진도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란 「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 대상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소아청소년과 운영 등 군민의 의료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지원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신청 및 지원 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의료기관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 사항을 검토하고 진도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 ③ 군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지원 할 경우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한다.
- ④ 보조금 신청 및 지급관련 절차는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⑤ 매년 사업 평가 후 보조금에 대하여 가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제5호 중 “이 조례에서 정한 검사의 거부”를 “제7조에 따른 보고·검사”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민간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 제4호의 보건의료기관 중 같은 조 제4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u></p> <p>2. (생략)</p> <p>3. <u>“진도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u></p> <p>제5조(지원 대상 등) <u>지원 대상은 진도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력 및 재정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1. 2. (생략)</p> <p><u>&lt;신설&gt;</u></p>	<p>제2조(정의) ----- -----.</p> <p>1. <u>“민간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중 같은 조 제5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u></p> <p>2. (현행과 같음)</p> <p>3. <u>“진도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란 「진도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u></p> <p>제5조(지원 대상) <u>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소아청소년과 운영 등 군민의 의료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지원</u></p>

3. (생략)

<신설>

제6조(감독) (생략)

제7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보조금을 지원 받은 민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이 조례에서 정한 검사의 거부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6조(신청 및 지원 방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의료기관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 사항을 검토하고 진도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의 선정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지원 할 경우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한다.

④ 보조금 신청 및 지급관련 절차는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⑤ 매년 사업 평가 후 보조금에 대하여 가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감독)(현행 제6조와 같음)

제8조(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7조에 따른 보고·검사 -----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한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6. (생략)

제8조(다른법률 등의 적용) 이 조례  
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관련 사  
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률」 및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

6. (현행과 같음)

<삭제>

#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07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진도군수

## 1. 개정이유

-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상향 및 지급방법 개선으로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 및 저출산 극복에 기여

## 2. 주요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 개정(안 제2조)
- 신생아양육비 지원 삭제(안 제2조)
- 출산장려금 지원액 상향 및 소급적용(안 제3조)

## 3.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 4. 관계법령 : 해당없음

## 5. 관련부서 의견 : 해당없음

## 6. 입법예고 사항 : 2022. 10. 19. ~ 11. 8.(20일간) / 의견 없음

##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2. 11. 9. / 원안의결

##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군에”를 각각 “부 또는 모가 군에”로 한다.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생아양육비 및 출산장려금”을 “출산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첫째아 : 500만원”을 “첫째아, 둘째아 : 1,000만원”으로, “4년간 분할지급”을 “6년간 분할지급, 마지막 7년째 300만원 지급”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셋째아”를 “셋째아 이상”으로, “18년간 분할”을 “11년간 분할지급, 마지막 12년째 7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2019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해서는 분할지급 기준을 소급적용하여 지급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양육비 등 지원대상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p> <p style="padding-left: 20px;">가. <u>신생아양육비지원 대상은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에 적합한 가정으로 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건강보험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u>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한다.</u></p> <p style="padding-left: 20px;">다. 출산장려금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u>군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으로 하되, 거주기간이 1년 미만 출생아인 경우는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출생시 지원금을 제외한 출산장려금을 매년 생일달에 분할 지급할 수 있다.</u></p> <p style="padding-left: 20px;">라. (생략)</p> <p>제3조(지원기준) ① ~ ③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p> <p style="text-align: center;"><u>&lt;삭 제&gt;</u></p> <p style="padding-left: 20px;">나. ----- -----<u>부 또는 모가 군에</u>----- -----.</p> <p style="padding-left: 20px;">다. ----- -----<u>부 또는 모가 군에</u>----- ----- ----- ----- ----- ----- -----.</p> <p style="padding-left: 20px;">라.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원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p>

④ 신생아양육비 및 출산장려금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1. 신생아 양육비 지원액은 「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기준에 적합하면 1명당 30만원으로 한다.

2. 출산장려금 지원액과 지급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첫째아 : 500만원(출생시 100만원,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

나. 둘째아 : 1,000만원(출생시 100만원,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9년간 분할지급)

다. 셋째아 : 2,000만원(출생시 200만원,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18년간 분할 지급)

라. 삭 제

마. (생 략)

바. (신 설)

④ 출산장려금-----  
-----.

<삭 제>

2. -----  
-----.

가. 첫째아, 둘째아 : 1,000만원-----  
-----  
- 6년간 분할지급, 마지막 7년째 300만원 지급---

<삭 제>

다. 셋째아 이상 -----  
-----  
----- 11년간 분할 지급, 마지막 12년째 700만원 -----  
-----

마. (현행과 같음)

바. 2019년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해서는 분할지급 기준을 소급적용하여 지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3쪽 중 1쪽)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b>신청인</b>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주민등록주소)		집전화
	출산자와의 관계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b>출산자</b>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도로명주소(주민등록주소)		집전화

<b>출생자</b>	성명
------------	----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및 거주기간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출산자와의 관계
	본인				[ ]에 [ ]아니오	
배우자				[ ]에 [ ]아니오		
자				[ ]에 [ ]아니오		
자				[ ]에 [ ]아니오		
자				[ ]에 [ ]아니오		

<b>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b>	출산 장려금	[ ] 첫째(이름: ), [ ] 둘째(이름: ), [ ] 셋째자녀 이상(이름: )
	출생아건강보험	[ ] 출생아 건강보험
	다둥이육아용품 구입비	[ ]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셋째아 이상)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신청 구분
	첫만남이용권(2022.1.1. 이후 출생자)	[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영아수당 (2022.1.1. 이후 출생자로 0~24개월 미만)	[ ] 영아수당(현금)	
양육수당 (2021.12.31. 이전 출생자로 0~86개월 미만)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아동수당	[ ] 아동수당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 기저귀([ ]국기초 [ ]차상위 [ ]한부모 [ ]기타) [ ] 조제분유([ ]산모의 사망·질병 [ ]아동복지시설등 아동 [ ]기타)	
해산급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이상) 고객명:                      고객번호:	
<b>다자녀</b> (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고객명:                      고객번호:
	지역난방비 경감	[ ] 지역난방사업자명(코드):                      고객명:                      고객번호:
<b>다자녀</b> (2명이상)	KTX 다자녀 행복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멤버십 번호:
	SRT 다자녀 가족 할인	[ ] 회원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멤버십 번호:
※ 만 25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KTX·SRT 멤버십회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b>국민행복카드</b>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시 작성	[ ]BC카드(                      은행)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롯데카드 [ ]신한카드 ※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사[ ]에 √ 표를 합니다.(카드사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 ※ 미소지자의 경우 발급을 희망하는 카드사[ ]에 √ 표를 하고, <b>직접 카드로 발급 신청</b> 하시기 바랍니다. ※ 첫만남이용권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하나의 카드로만 신청해야 합니다. ※ BC카드는 회원 은행사를 선택(IB기업, NH농협, S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우리, 전북, 제주, 우체국, 하나, 신한)
----------------------------------------------------	---------------------------------------------------------------------------------------------------------------------------------------------------------------------------------------------------------------------------------------------------------------------------------------------------------------------------------------------------------------

급여 계좌	성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영아수당(현금),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의 지급계좌는 부·모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만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급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만 가능  
 ※ 영아수당(현금), 아동수당,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	-------------------------------------------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20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진도군수** 귀하

<b>신청인 제출서류</b>	1. 신청서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 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b>담당공무원 확인사항</b>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b>참고사항</b>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첫만남이용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해당 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출산가구에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공하는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에스알에서 제공하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회원탈퇴시까지,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가족관계, 회원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서비스는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에서 정한 명절 특별 수송기간에는 운영하지 않으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운영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할인 좌석이 조기에 매진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 또는 에스알의 영업정책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되거나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당일에는 할인권 예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KTX 다자녀 행복 할인 승차권 또는 SRT 다자녀 가족 할인 승차권을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금액 회수 및 별도 부가운임이 부과되며,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회원은 할인금액 회수, 부가운임 수수 및 할인 자격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다자녀 지원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처리를 위해 다자녀 여부 등의 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서비스 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영아수당(현금)·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영아수당(현금)급여를 신청한 경우, 연령 도래시(만2세) 가정양육수당급여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2-108
----------	----------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출자 : 진도군수

## 1. 제정이유

-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추모사업 등 시행)에 따라 건립된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관리·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운영성과 및 결과분석, 시설관리와 점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관리·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해양안전교육·체험에 관한 사항,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의 사업을 수행
-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10조)
  - 국민해양안전관 이용방법, 이용료, 반환규정 명시
-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 자원봉사자 배치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국민해양안전관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

3.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5. 관련부서 의견 : 의견없음

6. 입법예고 사항 : 2022. 7. 27. ~ 2022. 8. 16.(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7. 사전 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분석평가서 검토통보 공문)

○ 규제심사 : 해당없음

8. 비용추계서 : 붙임

9. 참고사항 : 없음

10. 진도군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022. 8. 17. 원안의결

##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양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라 설립한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2. 위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길 161

**제3조(관리·운영계획의 수립)**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관리·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의 운영성과 및 결과분석
3.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의 시설관리와 시설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설 및 운영)** 군수는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하여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실내 교육·체험장 : 선박탈출 및 바다생존 수영법, 익수자 구조체험,

선박상황 대피체험, 해양직업 체험, 소화기 체험 및 응급구조 체험, 지진체험 및 풍수해 체험시설 등

2. 야외훈련장 : 해양안전체험장 및 어린이 해양안전시설 등 운영

3. 전시·숙박시설 : 4.16 메모리얼홀, 특수 영상관, 유스호스텔 등

4. 그 밖의 시설 : 사무실, 관장실, 의무실, 관리실, 방송실, 물품보관창고 등 각종 업무관련 시설, 매점 및 카페 등 편의시설

**제5조(사업 수행)**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양안전교육·체험에 관한 사항

2. 해양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자료발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의 개관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②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유스호스텔 포함)의 휴관일은 일요일, 공휴일 및 매월 세 번째 월요일(정기 점검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운영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군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방법)** ①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은 사전 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 이용자의 경우 제6조의 개관시간 내에 방문하여 현장접수 할 수 있다.

②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의 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성인 인솔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③ 체험코스별 이용가능 연령 및 성인 인솔자 동반기준 등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내 유스호스텔을 이용(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①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유스호스텔 포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군수가 이용료를 무료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반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3. 시설 개·보수, 감염병 예방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설을 휴관하는 경우 : 전액 반환
4. 이용자가 이용일 3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
5. 이용자가 이용일 2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이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6. 이용자가 이용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이용료의 20% 공제 후 반환
7. 이용자가 이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불참한 경우 : 이용료의

30% 공제 후 반환

**제10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2세 이하의 어린이
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안전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시설의 위탁)** ① 군수는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재산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 조례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시정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4.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⑤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관리·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진도군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2조(보험가입)** ① 군수는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과 유스호스텔 이용자의 사고 상해 및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수탁 계약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 또는 증서의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 배치)** 군수는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이용료 등(제8조 관련)

1. 진도군 국민해양안전관

구 분	1인당 이용료			비 고
	개인	단체 (15명이상)	진도군민	
입장료	2,000원	1,000원	1,000원	
일반체험	4,000원	3,000원	2,000원	미취학 아동 인솔자 무료
수조체험+일반체험	8,000원	6,000원	4,000원	12세 이하는 보호자 동행(무료)
70세이상	무료			해양훈련, 해양재난, 자연재해 등 일부체험 제외

2. 유스호스텔

구 분	청 소 년		일 반 인		정원초과 (1인 기준)
	8인실	9인실	8인실	9인실	
객실사용료	40,000원	50,000원	50,000원	60,000원	10,000원
식대 (1인1식)	6,000원		7,000원		
세미나실	○ 3시간 기준 : 60,000원 ○ 1시간 초과시마다 : 10,000원		○ 3시간 기준 : 70,000원 ○ 1시간 초과시마다 : 10,000원		
기타	○ 1박은 당일 15:00 ~ 다음날 11:00까지 한다. (초과시는 1박으로 간주) ※ 식대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식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사용자 준수사항

1. 시설물 파손 및 기타 시설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등 기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주변의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그 밖에 유스호스텔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유스호스텔 이용승인을 취소한다.

# 2023년도 예산안

의안 번호	2022-109
----------	----------

제출년월일 : 2022. 11. .  
제출자 : 진도군수

##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 의결코자 함.

## 주요골자

- 2023년도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도 (A)	2022년도 (B)	증감 (A-B)	
				%
합계	460,770,939	430,587,808	30,183,131	7.01
일반회계	451,049,639	422,713,465	28,336,174	6.70
특별회계	9,721,300	7,874,343	1,846,957	23.46

## 의안내용 : 첨부

【첨부】

## 2023년도 예산안 총괄조서

### □ 세 입

(단위 : 천원)

회 계 별	요 구 내 역				심의결과 증 감 액	비 고
	2023년도	2022년도	증 감	%		
합 계	460,770,939	430,587,808	30,183,131	7.01	-	
일반회계	451,049,639	422,713,465	28,336,174	6.70	-	
특별회계	9,721,300	7,874,343	1,846,957	23.46	-	

### □ 세 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요 구 내 역			심 의 결 과		비 고	
	2023년도	2022년도	증 감	증감액	예비비 계상액		
합 계	460,770,939	430,587,808	30,183,131	-	-		
일 반 회 계	451,049,639	422,713,465	28,336,174	-	-		
특 별 회 계	9,721,300	7,874,343	1,846,957	-	-		
특 별 회 계	소 계	9,721,300	7,874,343	1,846,957	-	-	
	상 수 도	8,341,815	6,475,304	1,866,511	-	-	
	의료급여기금	775,285	793,339	△18,054	-	-	
	자 활 기 금	603,000	603,000	-	-	-	
	주 민 소 득 지 원 기 금	1,200	1,200	-	-	-	
	주 택 사 업	-	1,500	△1,500	-	-	

□ 기금회계 (수입)

(단위 : 천원)

회 계 별	요 구 내 역				심의결과 증 감 액	비 고
	2023년도	2022년도	증 감	%		
합 계	22,173,313	19,710,763	2,462,550	12.49	-	
기금회계	22,173,313	19,710,763	2,462,550	12.49	-	

□ 기금회계 (지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요 구 내 역			심 의 결 과		비 고
	2023년도	2022년도	증 감	증감액	예비비 계상액	
합 계	22,173,313	19,710,763	2,462,550	-	-	
농 수 산 물 가 격 안 정	8,225,556	8,261,169	△35,613	-	-	
폐기물 처리시설 주 변 지 역 주 민 지 원	58,426	46,436	11,990	-	-	
재 활 용 품 판 매 대 금 관 리	188,415	93,183	95,232	-	-	
재 난 관 리	1,985,106	2,106,997	△121,891	-	-	
식 품 진 흥	84,948	83,320	1,628	-	-	
문 화 진 흥	6,622,556	5,087,601	1,534,955	-	-	
통합재정안정화	4,008,294	4,032,057	△23,763	-	-	
체 육 진 흥 기 금	1,000,012	-	1,000,012	-	-	